

##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1. 시 출연금
2.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 중앙정부 지원금
4.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금

② 시장은 재단운영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용도)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타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사업평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재단이 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을 매년 상반기

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인”이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전 지역의 담배 소매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설치의 제한) 자판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성인만이 출입하는 업소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는 조례 적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철거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

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 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 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되며, 시장이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이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각 호를 고려한 후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의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시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국내·외 기업의 본사·공장시설·연구소 등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규제제로지역”이라 함은 시 관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2장 투자유치 지원 체계

**제3조(유치대상 업종)**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업유치 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녹색성장산업 등 친환경 제조업종
2. 과학 및 기술관련 연구·개발업종
3. IT 또는 IT와 융합된 첨단입종
4.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업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친환경 기업유치 및 규제제로지역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기업유치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내에 기업유치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전남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기업민원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2. 기업 인·허가 민원 One-Stop 서비스 제공
3. 기업활동 규제제로지역 지정 추진
4.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6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

1.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업활동 규제제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3장 규제제로지역 운영

**제9조(규제제로지역 지정)** ① 시장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제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규제제로구역 지정은 시장이 직접 하거나 희망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로 검토한다.  
③ 시장은 규제제로지역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규제제로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규제제로지역의 지정요건)**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제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중에서 규제제로지역내 투자기업의 전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3,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규제제로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제제로지역 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규제제로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전문인력 확보와 인력수급이 용이할 것

**제11조(규제제로지역개발계획 수립)** ① 시장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제로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제로지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및 지정의 필요성
  2. 규제제로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및 시행방법
  3. 재원 조달방법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교통처리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기업유치계획
  8. 주거시설 · 보건의료 · 교육 · 복지시설 설치계획
- ② 시장은 규제제로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규제제로지역내에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 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초기정착보조금, 투자촉진장려금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제제로지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장부지로 장기간 무상 임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규제제로지역내에 투자하는 국내 · 외 기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규제제로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투자할 경우 공장부지임대 · 고용알선 · 애로사항 청취 등 투자기업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시장은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를 세계적인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국제기구”라 함은 「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구를 말한다.

② “국제교류 거점도시”라 함은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체류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입주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③ “국제교류 거점지구”라 함은 시가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거점도시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중장기적인 목표
  2. 국제행사, 국제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극대화
  4. 관련 산업 유치 전략 및 발전 방안
  5. 민간 국제교류 증진 지원 방안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센터 설치)** ① 국제교류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연구 및 기획
2. 국제행사, 국제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3.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4.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5.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6.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

③ 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점지구 육성)** ①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각종 기반시설과 서비스 여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국제교류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거점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자 등의 제안이 있는 경우 검토하며 접근성·정주여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거점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한다.

1. 국제회의장·전시장·컨벤션센터 등 회의시설
2. 공연장·대형극장·대형복합영화관 등 문화공연시설
3. 백화점·관광호텔 등 쇼핑 및 위락시설

④ 거점지구에는 우리말 이외에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국어 사용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거점지구 조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참여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세종테마파크 조성)** ① 거점지구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품격과 한국 고유의 전통미와 미래를 함축한 세종테마파크를 조성한다.

1. 백화점, 대형 쇼핑타운, 재래시장을 연계한 쇼핑거리
  2.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국제문화예술거리
  3. 한옥을 활용한 한옥거리
  4. 그 밖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시설
- ② 세종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국제기구 유치 지원)** ①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장기간 무상 임대
  2.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3. 인력 지원
- ② 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민원사무는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행사 등 유치 지원)** ①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행사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③ 원활한 행사 운영과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정주환경 조성)** 지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시설에 대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망 및 교통편의 시설
2. 교육기관
3. 의료기관
4. 각종 안내판(도로표지판, 문화재 및 관광안내도 등) 및 안내소 정비 등 선진안내시스템 구축

**제11조(도시 이미지 제고)** ①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특성과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② 각종 개발행위를 시행시 지역의 특색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시이미지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 소유자 등이 건축물 등의 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국제교류사업 지원)** 청소년·문화예술인·경제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하여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제 인재 육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제교류 수요 등 다양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 및 선진기술 견학 등을 위하여 국제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설치)** ①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광역협력사업)** ①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에 필요한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조성 등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력사업은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 설치)** 국제기구와 국제행사의 효율적인 유치 등 국제교류거점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 날부터 시행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농업인 단체
3. 영농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4. 기타 시장이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 지원 사업장을 시 관내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주택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금 담당 시급고 임원
2.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
3.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16조(지원한도액 초과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융자할 수 없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

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연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한 농업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농업발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109 호

###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봉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이하 “농업경영인 회”라 한다)와 농촌지도자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이하 “농촌지도자회”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문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경영인회 및 농촌지도자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만 이를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중식을 위하여 이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전문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사업의 결정
4. 기타 농업경영인회 및 농촌지도자회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까지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
3. 전문농업인의 시책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계획의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문농업인은 제12조의 대상사업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인력육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연기군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110 호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료의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분석의뢰서에 별지 제1-1호 서식 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 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받은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뢰받은 시료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을 추가하여 제출받은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별지2-1호 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지·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①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자로 납부하되, 분석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

시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 경비를 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분석 항목별 분석성분 및 구조(제2조 관련)

분석 항 목	분석성분 및 구조
1.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분석	유기물, $P_2O_5$ , $SiO_2$ , $Ex(K, Ca, Mg)$ pH, EC, 석회소요량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무기성분(N, $P_2O_5$ , $CaO$ , $MgO$ , $SiO_2$ , $K_2O$ )
4. 객토원 분석	점토함량
5. 오염분석	농업용수(pH, COD, $PO_4-P$ , $NH_4-N$ , $NO_3-N$ ) 농경지토양(As, Cd, Pb, Cr, Cu, Zn, Ni, Hg)

[별표 2]

###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순위	처리내용
1	○ 의뢰서 접수(수시로 접수)
2	○ 분석 실시
3	○ 성적서 작성
4	○ 결과 통지

[별표 3]

###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제9조 관련)

분석항목	분석기준	수수료(원)
(1)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1점 1성분	7,100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분석 ○ 토양화학성분(pH, 유기물, P <sub>2</sub> O <sub>5</sub> , SiO <sub>2</sub> , EC Ex(K, Ca, Mg), 석회소요량)	1점 1성분	7,000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N, P <sub>2</sub> O <sub>5</sub> , CaO, MgO, SiO <sub>2</sub> , K <sub>2</sub> O)	1점 1성분	7,600
(4)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	1점 1성분	4,400
(5) 오염분석 ○ 농업용수(pH, COD, PO <sub>4</sub> -P, NH <sub>4</sub> -N, NO <sub>3</sub> -N) ○ 농경지토양(As, Cd, Pb, Cr, Cu, Zn, Ni, Hg)	1점 1성분 1점 1성분	6,300 8,700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분석의뢰서

의뢰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의 뢰 내 용	분석항목		
	의뢰시료수		
	총분석성분수		
사용목적(용도)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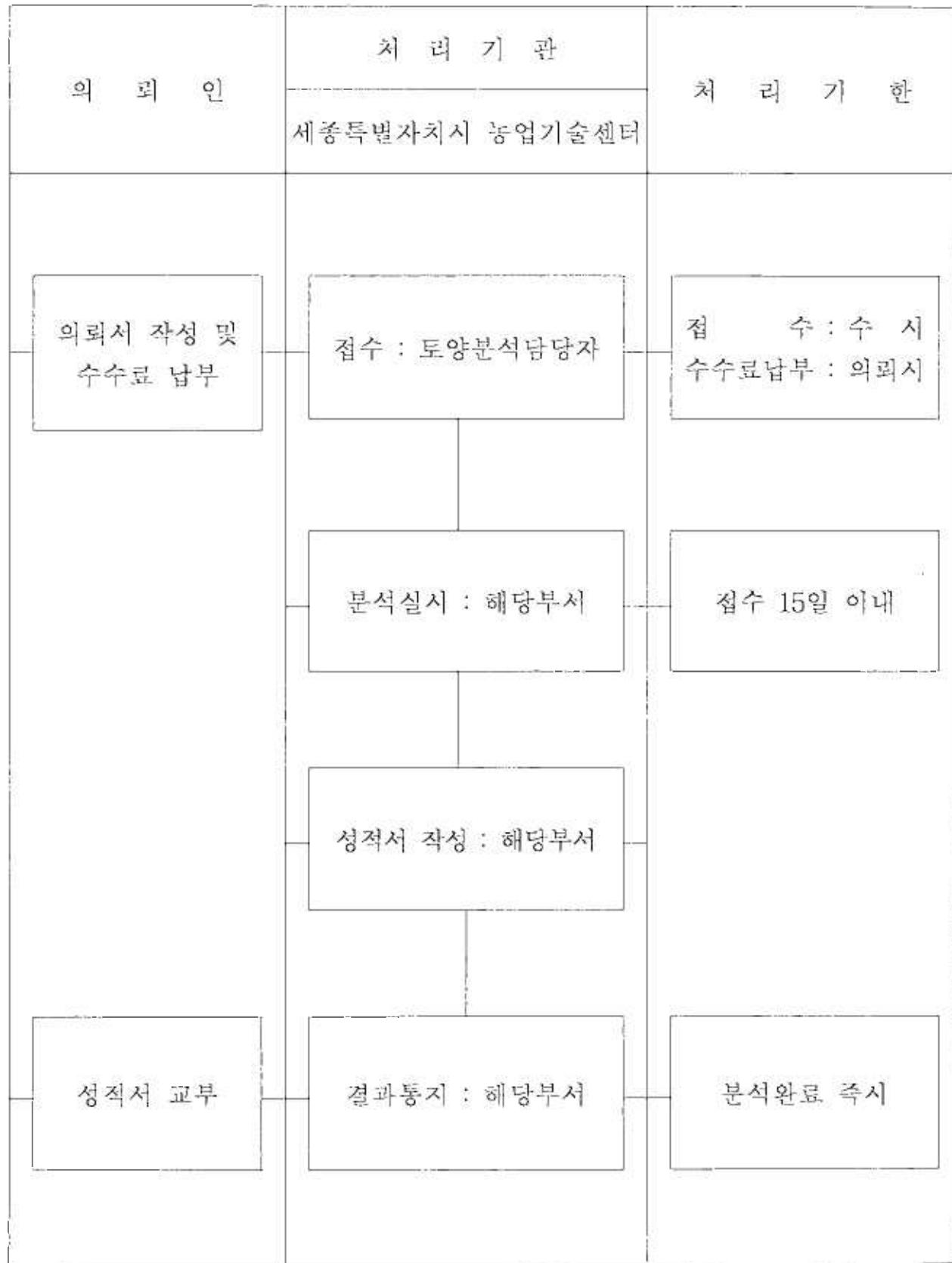
의뢰인(법인) (서명 ·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기타 참고사항	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수입증지

(뒷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

일련 번호	시료채취			지목	지번	면적 (m <sup>2</sup> )	경작자			주재배 작물명
	시료 번호	토지 소재지	토지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 양식은 A4용지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읍·면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b>분석결과통지서</b>				
의 뢰 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재지)		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	분석의뢰시료명			
	분석방법	농축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석항목	기준치	분석결과	
사용목적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p>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 지합니다.</p>				
년 월 일				
<b>농업기술센터소장</b>				
기타 참고사항 : 분석결과는 의뢰한 동일 시료에 한함.				

[별지 제2-1호서식]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인 련 번 호	시료내역						토양화학성분별분석결과							
	시 료 번 호	지 지 면	면 적	토 지 소재자	경 작 자	pH (1:5)	유 기 물 (%)	유효 인산 (ppm)	치환성 (Cmol <sup>+</sup> /kg)			EC (dS/m)	유효 규산 (ppm)	
									K	Ca	Mg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 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농기계 부품센터(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순회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 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상 지역은 리·통 자연부락 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③ 순회수리반은 차량을 이용 마을단위 순회 수리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

**제4조(순회수리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사 2, 농업기계교관 1(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을 순회수리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제5조(수리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도록 한다.  
② 수리 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수리요원(기능직, 농업기계 기능사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순회전용차량)** ① 순회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순회 차량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종 별	비 고
경운정지기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양수화기	이양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기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제8조(수리용 부품 비치 및 확보) ① 제7조의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훈련시설내(부품센터)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농업기계 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품절되지 않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확보는 정부 보급 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고 고장 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 정부보급이 중단된 기종의 부품은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9조(부속품대금) ① 수리 및 부품 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일 징수한 부품대금은 시 금고에 익일 입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기계의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가당 2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2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00원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받으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순회수리계획 수립)** ①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역여건을 감안 순회 수리일정(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 실시하되,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10월에 중점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병행 및 농기계수리요원 확보 상황 등을 고려 추진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 원부(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 ① 소장은 연간 순회수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반상회보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전에 읍·면장과 리장에게 통보하고 앱프 방송을 이용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도록 한다.

**제13조(현장교육)** ① 순회수리시에는 현장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 원인과 관련된 핵심 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 사용법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장 참여 농민에게 고장 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제14조(수리곤란 기계)** 현장 수리가 곤란한 농업 기계는 전문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협조체제 유지)** 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6조(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계상)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수리용 장비 및 공구내역

구 분	내 역
장비 (8종)	전기용접기(직류아크용접기), 분해용풀러, 쟈기(3 th), 컴퓨레샤, 노즐테스터기, 그라인더, 바이스, 도인케이지
공 구 (31종)	전기드릴, 수동식 드릴, 줄(대·중·소), 쇠톱, 망치(대·중·소), 안전함대, 롱로스프라이어, 양철가위(대·중·소), 오플렌치(m/m inch), 스페니(m/m inch), 링스페너(m/m inch), 바이스프라이어, 드라이버(−)(대·중·소), 드라이버(+)(대·중·소), 조절렌치 (대·중·소), 소켓렌치(m/m inch), 립퍼, 프라이어, 뻗치, 도오크렌치, 휠러게지, 버니어셀리퍼스, 벨브리프트, 피스톤링 익스팬더, 프러그렌치(대·중·소), 육각렌치, 셀라이프렌치, 전기인두, 마이크로미터(외), 마이크로미터(내)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기계순회수리일정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 주 소 : 시 읍 · 면 리

○ 성 명 :

○ 기 종 :

○ 고장부위 또는 원인 :

상기 기종을 수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세종특별자치시장 규하

### ○ 수리정비내역

수리정비 부 위	부 품 교 환			소 모 품 사 용			금 액
	품 명	규 격	수 량	품 명	규 격	수 량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담당	과장	결재

년 월 일 ( 요일)

수리장소 :

수리정비내용 :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경운기	관리기	바인더	원동기	미스트	분무기		기타
실적	계								동력	인력		
	수리											
	정비											
부품	교환	증										
	계											
	금액											

○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4호 서식]

## 부 품 수 불 대 장

### 품명 :

[별지 제5호 서식]

## 소모품수불대장

卷之三

[별지 제6호 서식]

## 농업기계순회수리장비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 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란 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기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서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임대대상자) 임대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 후 신원을 확인한 자에 한한다.

제7조(임대농기계) 임대농기계는 임대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농기계로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임대조건) ① 임차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기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단, 농기계 출고전 농기계안전교육으로 농기계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단, 농기계 상하차용 사다리, 인력파종기, 인력비닐피복기 등 전동기 및 내연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본체 및 작업기는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임차가 가능하다.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는 임대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기간은 1일부터 3일까지로 하고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10조(사용신청 및 임대료 징수) ①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장을 방문, 별지 제3호 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 징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②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임대한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임차인이 농기계 반환일시에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해야 하며, 추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다만, 출고날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2분의 1과 잔여일은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3조(임대료의 면제) ① 시장은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가 중에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기계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한 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회에 1일 이상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체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 의무 불이행시
4. 제18조제1항 농기계 반환시 청소 및 세척의 의무 불이행시

제16조(양도와 대여금지)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농기계를 사용할 운전요원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③ 농기계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방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농기계의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8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 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9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 또는 마모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인内外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작목별연구회 회장, 농업 관련기관·단체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농기계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2.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임대료 정수기준

(단위 : 원/1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대료	비고
50만원 미만	1,00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3,00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5,000	
7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20,000	
900만원 이상 ~ 1,100만원 미만	25,000	
1,1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30,000	
1,3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35,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45,00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50,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55,000	
3,500만원 이상	60,000	

※ 농기계 상하차용 사다리, 인력파종기(무동력), 인력비닐파복기(무동력)는 임대료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	--

구입금액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구입연월일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성능		내용연한	
주요특징			
제조회사	회사명		
및	전화번호		
구입처	홈페이지		

사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주요 관리내역			
일시	주요 문제점	조치결과	담당자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단위: 천원)

\* 입대차인은 입대료 수납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연기군수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공동운전자			주민등록번호
임 대 농 기 계				
농기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일)			
임 대료	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용 조건을 준수 하여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 사 용 조 건 -

- 임차인은 임대한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닦은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할때)
-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 기간중 소모되는 유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 임대기간이 종료시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 임대 기간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대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임차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농기계 임대료 면제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차장비 및 기간	기종명(형식)		
	사용기간		
임대료	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	원
면제신청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입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한국어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 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면제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자체 없이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

향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및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14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저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 제5장 녹생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생활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 의회사무처
-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단체로서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단 및 기관·단체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의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 홍보 및 교육지원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

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

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시장은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업무 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